



거주사실증명서

학생 이름: 학교 이름:

자택 주소:

자택 방문일: 거주자 전화번호:

거주자 수:

거주자들의 이름: 1. 학생과의 관계:

2. 학생과의 관계:

3. 학생과의 관계:

4. 학생과의 관계:

관계가 없다면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세입자 이름:

추가 세입자 이름들:

학생은 임대중인가요?: 네 아니오 만약 아니라면, 이유를 써주십시오:

침실 수: 침실 수/수면실 수:

옷장의 내용물 (의류, 사이즈, 등등):

부모/ 후견인과 학생간의 개인용품 구별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상술 하십시오:

본인은 위의 학생의 자택방문을 허가한 학교의 교장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공된 정보가 자택방문에 의한 사실확인 이며 학생의 거주사실임을 증명 합니다. 그리고 자택 방문으로 학생의 거주를 확인하였습니다.

교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짜

위증죄에 대한 처벌 사항:

DC 교육구의 공립학교나 특수학교 직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학생의 거주 증빙서류와 관련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수업료의 배상, 2000 불 이하의 벌금이나 90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과 구류가 동시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콜롬비아 교육구 비거주자 수업료 납부 법안에 의거하며 1960년 9월 8일 제정되었으며, 2012년 콜롬비아 교육구 공립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거주 위반방지 수정 법안에 따릅니다(DC 코드 38-312). 해당 사항 관련자의 경우에는 DC 교육구 교육위원회 법무실로 연락바랍니다.

